#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[시행 2021. 4. 12.] [금융감독원세칙, 2021. 4. 1., 일부개정]

금융감독원(기업공시제도실), 02-3145-8443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금융감독원장(이하 "감독원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기준)**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.

####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

- 제2조의2(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) ① 규정 제2-2조제2항제4호·제5호 또는 제2-2조의 2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(이하 "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"이라 한다)의 발행인은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에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7. 16., 2016. 6. 23.>
  - ②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사전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4. 3.]

- 제2조의3(매매방법 등) 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매매거래는 시행령 제177조에 따른 상대매매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삭제<2016. 6. 23.>
  - ③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지급 및 결제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④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인 증권 등을 관리하는 계좌(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계좌 또는 영 제18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 대리인의 계좌를 포함한다. 이하 '자기분계좌'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한다.<신설 2016. 6. 23.>
  - ⑤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, 매매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기관투자자의 한국예탁결제원 자기분계좌를 통해 지급결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4. 3.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조의4(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) ① 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6. 23.>
  -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6. 23.>
  - ③ 삭제<2016. 6. 23.>

[본조신설 2012. 4. 3.]

- **제2조의5(해외주요시장)** 규정 제2-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"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요시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.
  - 1. 「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」<별표5>의 적격시장 중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해외증권시장
  - 2. 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시장

[본조신설 2009. 7. 3.]

## 제2장의2 외국 국채증권의 매출

- **제2조의6(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)** 규정 제2-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발행인 및 대상증권 등에 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
  - 2. 투자자가 제1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, 우편,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

[본조신설 2016. 6. 23.]

#### 제3장 증권 분석기준 등

- 제3조(국제신용평가기관) 규정 제2-4조의2제2항 및 제2-11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"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.<개정 2009. 7. 3., 2016. 6. 23.>
  - 1. Standard & Poor's Financial Services, LLC.
  - 2. Moody's Investors Service, Inc.
  - 3. Fitch Ratings, Inc.
- 제4조(합병가액의 산정방법) 규정 제5-13조에 따른 자산가치 ·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 치를 각각 1과 1.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조(자산가치) ① 규정 제5-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. 단,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주식의 총수에 반영한다.

자산가치 = 순자산 / 발행주식의 총수<개정 2010. 11. 30., 2021. 4. 1.>

- ② 제1항의 순자산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(이하 이 장에서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(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. 이하 "최근사업연도"라 한다)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<개정 2010, 11, 30, 2012, 12, 5, 2021, 4, 1.>
- 1.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.
- 2.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한다. 단,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할 수 없다.
- 3.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 가와의 차이를 가감한다.
- 4.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한다.
- 5.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한다.
- 6.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한다.
- 7.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한다. 단, 최근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8.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,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,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한다.
- 9.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하다.
- 10.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,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 오류수정이익을 가산한다.
- 11.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한다.
- 제6조(수익가치) 규정 제5-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,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.<개정 2010. 11. 30., 2012. 12. 5.>
- 제7조(상대가치) ① 규정 제5-13조에 따른 상대가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상대가치로 하며, 제1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 11. 30., 2012. 12. 5.>

1.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유사회사"라 한다)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%이상을 할인한 가액.

유사회사별 비교가치 = 유사회사의 주가 × {(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/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) + (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/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)} / 2

- 2.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 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.
  - 가.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 발행가액
  - 나.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행사가액
-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.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.
- ③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제6항제1호의 주당법인세비용차 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.

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= {(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/ 발행주식의 총수) + (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/ 발행주식의 총수)} / 2<개정 2010. 11. 30.>

- ④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치로 하며,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 또는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, 제5조제 2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 11. 30.>
- ⑤ 유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으로 한다.<개정 2010. 11. 30., 2012. 12. 5.>
- 1.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%이상일 것
- 2.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
- 3.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
- 4.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"적정" 또는 "한정"일 것

**제8조(분석기준일)**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로 한다. 다만,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#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

제9조(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전자서명"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.
- 2. "비대칭 암호화방식"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.
- 3. "전자서명생성키"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
제10조(적용대상 전자문서) 이 장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과 같다.

- 1. 법,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제출하는 공시서류
- 2. 「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」제16조제2항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
- 제11조(전자공시시스템 운영) ① 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감독원장은 규정 제6-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) ① 제출인은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・성명 등 전자문 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.
- 제13조(전자문서의 제출등) ①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・분류・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② 제출인은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으로서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한 서류
  - 2.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서류
  - 3. 기타 전자문서화하기가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
- 제14조(첨부서류의 분리제출) ① 제출인은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(이하 "신고서등"이라 한다)의 본문(기재사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본문을 최초로 전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고서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5조(참조방식에 의한 제출) 제출인은 신고서등이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의 본문이나 첨부서류와 동일한 경우 그 접수번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해 본문이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16조(정정문서의 제출)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17조(전자서명의 효력등)** ①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출인이 제출인외의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금융위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의 요청이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8조(전자서명의 등록) ① 제출인이 제17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(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)를 생성한 후 전자서명검증키를 등록하여야 한다.
  - ②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생성한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.
- **제19조(전자서명의 인증)** ①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인 증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출인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서명을 제10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이 장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거래소·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(이하 이 장에서 "관계기관"이라 한다)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*제20조(전자서명의 변경)** 제출인이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전 자서명인증서의 폐지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
- 제21조(전자서명의 폐지)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.
  - 1. 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자서명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  - 2. 제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
  - 3. 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・훼손 또는 도난・유출된 경우
  - 4. 기타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22조(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) ① 전자문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독원의 업무시간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감독원장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 제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)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당해 작성자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 부칙 <제호,2021.4.1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**(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합병에 대해서는 제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에 따른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